

「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대관료 반환율을 상향하고, 역사자료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의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역사자료관 소재지 현행화(안 제2조)
- 나. 대관료 반환기준 정비(안 별표 3)
- 다. 용어 및 문구 정비(안 제19조, 제2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, 역사자료관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대관료 반환기준을 정비하여 역사자료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료의 110%를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다만, 반환율이 기존 100%에서 110%로 상향됨에 따라 대관 취소 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향후 대관 취소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역사자료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반환기준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여, 이용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